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3. 3.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2월 25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25일
- 다. 상정일자 : 제27회의회(임사회) 제3차위원회(95. 3. 3.)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문엽승.

가. 제출이유

종전의 지방세법중 지방세감면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감면폭을 축소 조정하고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을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통합규정하며 건설기계를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폭 개정된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이 1995.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중 관련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종전에 천재·지변등의 특수한 사정으로 납기내에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납기한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천재·지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이나 신고 납부등 포괄적인 기한으로 정하여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이를 연장토록 함(안 제7조)
- 종전의 지방세법에 각 세목별로 산

재되어 있던 지방세 감면·면제조항이 개정된 지방세법 제5장에 종합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등의 감면신고사항을 삭제하고 비과세에 대한 신고사항만을 세목별로 적용토록 함(안 제17조, 제29조제2항, 제33조)

- 건설기계를 재산세부과대상으로 규정 하였던 종전의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및 동법 제181조등이 폐지되고 동법 제132조의 3등에서 재산세 대신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 동 조례중 건설기계의 재산세 신고관련사항등을 삭제함(안 제17조제5호, 제24조)

- 농협, 수협, 축협중앙회가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을 규정 하였던 종전의 지방세법 제184조의 3 및 제234조의14 제2항제6호가 폐지되고 개정된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농수산물유통시설등에 대한 지방세감면사항이 통합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중 건축물 및 토지로 구분하여 경감 규정을 두었던 것을 부동산으로 통일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19조, 제2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94.12.22.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제규정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7조는 지방세법 제26조2의 종전 규정에 납기한을 정하

여 부과 고지되는 세목에 대하여만 연장이 가능하였으나 새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는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등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기한연장의 경우에만 적용토록 하였으며,

- 안 제17조와 안 제29조제2항 및 제33조의 감면규정은 지방세법 제5장이 신설됨에 따라 법 제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에 의하여 감면을 신청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 규정된 감면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고,
- 조례 제28조의 구관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은 안 제19조의 구관사업부동산에 대한 경감규정에 통합규정함으로써 삭제하는 것입니다.
- 안 제22조는 종전규정의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고 안 제24조가 삭제된 것은 지입제로 운영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지방세 과세과목이 재산세에서 등록세로 개정되어 특별시세로 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불합리한 제규정을 정비·보완하는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 제3절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구관사업등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이 제2절 재산세 규정인 안 제19조에 통합규정된 것은 법규 적용상 문제점은 없더라도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규입법 형식상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착오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법규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9
----------	-----

제출일자 : 1995. 2. 25.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종전의 지방세법중 지방세감면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감면폭을 축소조정하고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을 장(章)을 신설하여 통합규정하며 건설기계를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폭 개정된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이 1995.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중 관련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 골자

- 종전에 천재·지변등의 특수한 사정으로 납기내에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납기한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천재·지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이나 신고납부등 포괄적인 기한으로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이를 연장토록 함.(안

제7조)

- 종전의 지방세법에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있던 지방세 감면·면제조항이 개정된 지방세법 제5장에 종합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등의 감면신고사항을 삭제하고 비과세에 대한 신고사항만 세목별로 적용토록 함.(안 제17조, 제29조제2항, 제33조)
- 건설기계를 재산세부과대상으로 규정하였던 종전의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및 동법 제181조 등이 폐지되고 동법 제132조의3등에서 재산세 대신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 동 조례중 건설기계의 재산세 신고관련 사항등을 삭제함.(안 제17조제5호, 제24조)
- 농협, 수협, 축협중앙회가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을 규정하였던 종전의 지방세법 제184조의3 및 제234조의14제2항제6호가 폐지되고 개정된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농수산물유통시설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이 통합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중 건축물 및 토지로 구분하여 경감 규정을 두었던 것을 부동산으로 통일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함.(안 제19조, 제28조)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4.12.20. 법률 제4789호)제15조
-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제3조, 제26조의2, 제180조, 제181조, 제184조 제188조제1항, 제234조의12, 제245조의2, 제266조제3항 및 제4항, 제

5장이하

-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제11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조제목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법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신청서를 납기한까지”를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를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로 하며 “납기한의 익일부터”를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로 하고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3항중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를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로 하며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를 “연장된 기한내에”로 하며,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17조중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내지 제7호를 제5호 내지 제6호로 하며, 동조 제목, 본문 및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법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구관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①법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관사업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3. 생산 및 검사 사업용 부동산
4.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

②법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2조중 “법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를 “법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로 한다.

제24조 및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3조중 조제목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고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를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납기한의 연장)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법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p> <p>②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연장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다시 연장할 수 있다.</p>
<p>④(생략)</p> <p>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p>	<p>④(현행과 같음)</p> <p>⑤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p>
<p>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제184조, 제184조의2 및 법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p>	<p>제17조(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법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p>

현 행

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다.

- 1.~4.(생략)
5.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6. 선박의 성질, 명칭, 정계장, 구조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9조(구관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에서 “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 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률을 100분의 75로 한다.

제22조(중과세대상지역)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개 정 안

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 1.~4.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 제6호와 같음)
6.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9조(구관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관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3. 생산 및 검사 사업용 부동산
4.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

②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2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현행	개정안
<p>제24조(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용도·취득가격·과세사실 발생년월일·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5. (생략)</p>	<p>&lt;삭 제&gt;</p>
<p>제28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법 제234조의14 제2항제6호의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li> <li>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li> <li>3.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li> <li>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li> </ol>	<p>&lt;삭 제&gt;</p>
<p>제29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생략)</li> <li>② 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부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부과세나 감면할 수 있다.</li> </ol>	<p>제29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행과 같음)</li> <li>② 법 제234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부과세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과세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부과세할 수 있다.</li> </ol>

